

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(제102조제4항 관련)

자동차에어백 경고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기할 것

- 가. 경고문구는 승객석 햇빛가리개의 바깥 쪽 면과 안 쪽 면에 표기할 것. 다만, 안쪽면에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햇빛가리개를 내렸을 때 보이는 천정면에 표기할 수 있다.
- 나. 크기는 가로·세로 각각 120밀리미터·60밀리미터 이상 또는 면적 7,2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
- 다. 그림문자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되, 필요한 경우 그림문자의 배열은 변경할 수 있을 것

